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일반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공고일 : 2023.04.20.]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4.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심사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는 경우
 -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
 -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
 - 그 외 중복신청하는 경우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지역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4개월까지** 유지되고, **24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1 모집지역 및 예비입주자 모집 세대 : 148세대

구분	지역	계	1형[2인 이하 가구]	2형[2인~4인 가구]	3형[4인 이상 가구]
제주시	애월읍	2	-	-	2
	한림읍	32	32	-	-
	조천읍	5	5	-	-
서귀포시	동지역	70	70	-	-
	대정읍	4	-	-	4
	성산읍	2	-	-	2
	표선면	33	30	-	3

- 본 모집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현재 공급 중인 주택 및 향후 신규매입주택의 공사(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지역별·유형별로**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순위는 **지역별·유형별로** 우리공사에서 **기존 관리되고 있는 예비입주자 후순위로** 선정 합니다.

※ 모집지역의 주택 현황은 공고문의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공급하는 전체주택이 아님을 유의)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4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제3항에 따른 대상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므로 위 세대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 현재 사업대상지역(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동거인도 신청 가능)
-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LH공사 매입임대주택 포함) 및 LH공사 매입임대주택과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모집일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사업대상지역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의 행정구역**

예시)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제주시에 신청 가능**

예시) 현재 '제주시'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은 **서귀포시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읍·면 지역만 신청가능)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의 경우 읍·면 지역만 신청 가능 합니다. 동지역은 1순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1인	4,024,661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347,719원 이하
		2인	5,505,914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003,226원 이하
		3인	6,718,198원 이하	4,702,739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인	7,622,056원 이하	5,335,439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5,628,344원 이하	4,020,246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6,091,147원 이하	4,350,820원 이하
		7인	9,362,786원 이하	6,553,950원 이하	4,681,393원 이하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5,5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 ¹⁾ ·창업 ²⁾ 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신청자 본인 제외)의 수 ³⁾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추가 가점]		
-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 미성년 자녀가 2명 - 미성년 자녀가 1명	3점 2점 1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여부 *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1점
- 중증장애인 여부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을 포함함	- 중증장애인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인정 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제외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가 또는 나목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인정(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 전용임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 나. 전용임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	4점 2점
⑥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 미만 다. 50% 이상 65% 미만 라. 30% 이상 50% 미만	5점 4점 3점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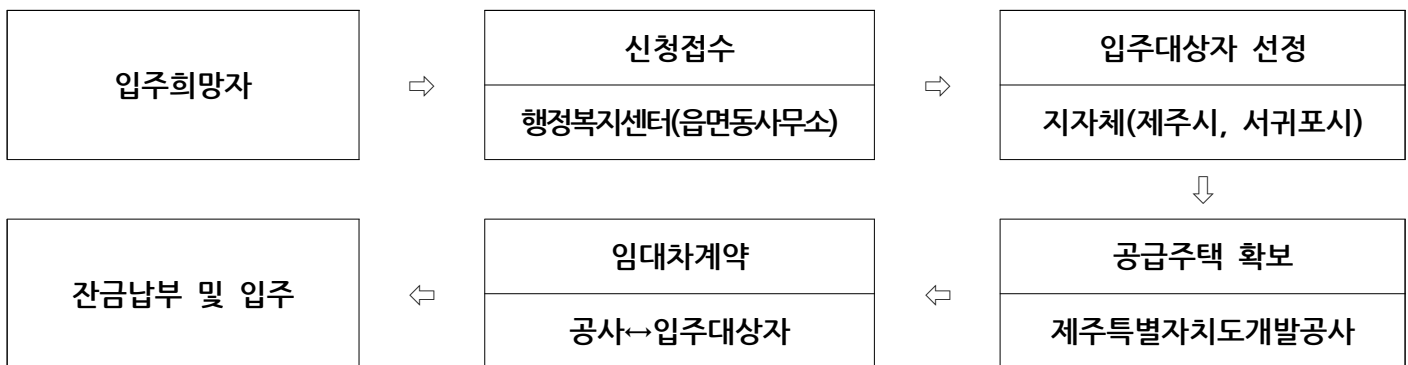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보증금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자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증액 전환은 표준임대보증금의 50%범위내 전환 가능합니다.(전환율 6% 적용)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2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전환도 가능합니다. - 전환기준 : 증액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전환율 6% 적용) 감액 시 전환 후 월임대료의 20개월분 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전환율 2.5% 적용)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택별 임대조건은 현재조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및 입주절차



5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접수기간	신청장소
2023.05.02.(화) ~ 2023.05.04.(목)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2순위의 경우 읍·면 지역만 신청 가능 합니다. 동지역은 1순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04.20.)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 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통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및 저소득 고령자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및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신청서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 참여기간〉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3.04.20.)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5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6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 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 80% 할증)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입주자 선정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격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지역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4개월까지 유지 되고, 24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공고 전 잔여 예비입주자가 있는 모집지역에는 잔여예비입주자가 우선하며, 향후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사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 신규매입 등으로 다량의 주택에 계약 안내될 시 모집지역 주택별 순차적 안내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 의합니다.

7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4-780-3594, 3596~7)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23. 04. 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축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모집 지역의 임대주택 현황

- ※ 아래의 현황은 2023.03.31. 기준, 우리공사가 모집하는 지역의 참고자료이며 임대주택의 전체수량은 아닙니다.
 ※ 모집 신청시 동지역(시내권)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현재 공가가 없는 애월읍, 대정읍, 성산읍 지역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타지역 대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림읍 임대주택 현황(공가 및 기존임차인 세대)

번호	주택명	주소	호수	입주현황	유형	보증금	월임대료
1	블루원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10-2	304	공가	1형	3,459,000	87,970
2	블루원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10-2	402	공가	1형	4,840,000	115,490
3	한림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3	205	기존임차인	1형	4,789,000	116,570
4	한림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3	304	공가	1형	3,816,000	94,810
5	채움빌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50	101	기존임차인	1형	4,408,000	86,000
6	채움빌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50	102	기존임차인	1형	4,295,000	83,600
7	채움빌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50	205	공가	1형	4,408,000	111,070
8	채움빌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50	301	기존임차인	1형	4,408,000	111,070
9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202	공가	1형	4,240,000	86,190
10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203	기존임차인	1형	4,799,000	97,910
11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204	기존임차인	1형	3,732,000	77,380
12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301	기존임차인	1형	4,263,000	86,080
13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303	공가	1형	4,849,000	97,670
14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304	공가	1형	3,781,000	77,160
15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305	공가	1형	5,536,000	110,710
16	동화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37-3	403	기존임차인	1형	5,114,000	105,870

조천읍 임대주택 현황(공가 및 기존임차인 세대)

번호	주택명	주소	호수	입주현황	유형	보증금	월임대료
1	조천주택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38-5	202	공가	1형	3,269,000	44,800

표선면 임대주택 현황(공가 및 기존임차인 세대)

번호	주택명	주소	호수	입주현황	유형	보증금	월임대료
1	씨티빌B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0	205	공가	1형	3,760,000	78,410
2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201	기존임차인	1형	3,671,000	66,500
3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203	기존임차인	1형	3,671,000	66,500
4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204	공가	1형	3,671,000	66,500
5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205	공가	1형	2,966,000	53,580
6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303	공가	1형	3,671,000	66,500
7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304	공가	1형	3,671,000	66,500
8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305	기존임차인	1형	2,966,000	53,580
9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402	기존임차인	1형	5,725,000	102,620
10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403	공가	1형	2,966,000	53,580
11	씨티빌C동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34	401	공가	3형	13,786,000	238,790

서귀포시 동지역 임대주택 현황(공가 및 기존임차인 세대)

번호	주택명	주소	호수	입주현황	유형	보증금	월임대료
1	이도스타빌리지 106동	서귀포시 신흥로 16	502	공가	1형	4,978,000	143,190
2	강정스케치	서귀포시 강정하로 34	208	공가	1형	2,984,000	68,590
3	효돈빌	서귀포시 과원동로 5	203	공가	1형	2,451,800	94,760
4	파크뷰	서귀포시 서문서로55번길 19	210	공가	1형	5,345,000	131,000
5	파크뷰	서귀포시 서문서로55번길 19	408	공가	1형	4,923,000	118,500
6	파크뷰	서귀포시 서문서로55번길 19	605	기존임차인	1형	9,763,000	237,630
7	현우빌	서귀포시 신북로68번길 9	202	공가	1형	4,341,000	83,150
8	현우빌	서귀포시 신북로68번길 9	205	기존임차인	1형	4,341,000	83,150
9	현우빌	서귀포시 신북로68번길 9	206	공가	1형	4,341,000	83,150
10	현우빌	서귀포시 신북로68번길 9	304	공가	1형	4,341,000	83,150
11	청송빌	서귀포시 중문로 61-10	201	기존임차인	1형	3,291,000	50,370
12	청송빌	서귀포시 중문로 61-10	202	기존임차인	1형	6,666,000	101,830
13	청송빌	서귀포시 중문로 61-10	303	기존임차인	1형	7,268,000	110,970
14	청송빌	서귀포시 중문로 61-10	304	기존임차인	1형	4,353,000	66,320
15	청송빌	서귀포시 중문로 61-10	402	기존임차인	2형	11,742,000	216,330
16	풀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67-7	202	공가	1형	3,547,000	59,740
17	풀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67-7	203	기존임차인	1형	5,226,000	87,800
18	풀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67-7	204	기존임차인	1형	3,923,000	65,450
19	풀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67-7	205	기존임차인	2형	7,657,000	127,300
20	풀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67-7	301	기존임차인	1형	4,450,000	74,970
21	풀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67-7	303	기존임차인	2형	7,176,000	119,070
22	풀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67-7	401	기존임차인	2형	9,148,000	153,270
23	제이타운A동	서귀포시 중앙로182번길 24-5	203	공가	1형	5,615,000	105,160
24	제이타운A동	서귀포시 중앙로182번길 24-5	303	기존임차인	1형	5,664,000	104,930
25	제이타운A동	서귀포시 중앙로182번길 24-5	402	기존임차인	3형	15,712,000	293,600